

의안번호	2207294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5.03.18.
추계번호	24C640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의 지원)	○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2.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 단, 대한의학회에 필수의료분야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과 이와 연계한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장이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지도전문의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13조의3 (공동수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외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재량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의4 (전임의 수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임의를 위한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임의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의료 분야의 전임의 수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 그 밖에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수련환경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전임의 수련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 (현행) 제9조에 따른 수련 규칙 이행 여부, (이하 생략) - (개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이하 생략)	의무규정
7	안 제18조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수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대한의학회에 위탁하여야 함(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기시행으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4,500만원, 2017년)하였으나, 전공의 수련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의 포함은 기존 연구용역비로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12조 (지도전문회의 지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3조의3 (공동수련)	
5	안 제13조의4 (전임의 수련)	
6	안 제14조 (수련환경평가)	
7	안 제18조 (업무의 위탁)	

2. 상세 사유

□ 국가의 지원, 지도전문회의 지정, 공동수련, 전임의 수련, 업무의 위탁 (안 제3조·제12조·제13조의3·제13조의4·제18조)

-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도전문회의·공동수련·전임의 수련·수련환경평가 등 현행 정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3조·제18조) 개정안은 ‘국가가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신규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를 대한의학회에 위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권고적·선언적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움
- (안 제12조)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1항¹⁾에 따른 지도전문회의²⁾를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의 ‘책임지도전문회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도전문회의의 역할별 지정에 대한 명문화로 인해 지도전문회의의 수와 정부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1) 제12조(지도전문회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회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2) 동법 제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회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은 8개 전문과목* 및 인턴을 수련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련 지원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2025년 기준 2,332억원 배정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교육전담 및 책임 지도전문의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안 제13조의3)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도 내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을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공동수련 시범사업(2024)”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2025)”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표 1]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도전문의 역할

구분	총괄 책임자	교육전담 지도전문의	책임 지도전문의
역할	프로그램 전반적 운영·관리 책임	전공의 전담 교육	전문과목별 수련 관리
		일대일 피드백, 실습 기회 부여 및 참관·지도	
수련업무 비중(예시)		20~30% 이상	40~50%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 (안 제13조의3) 현재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수련 프로그램이나 비용의 지원은 부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임의 수련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임의 수련 신설에 대해 「의료법」 상 전임의 자격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수련 지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수련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음
- (안 제14조) 개정안에 따라 수련환경평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련환경평가 수행지원 기관의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안에 명시된 신규 사업의 규모를 현시점에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에 9억 4,300만원을 배정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설문조사, 수련환경 관리시스템, 전공의 전형

시스템 개발·운영 등),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